

의안 번호	1473	【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】 <b>심 사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. 8. 28.(화)
- 나. 제출자 : 이명녀 의원 외 10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8. 28.(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9. 7.(금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이명녀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의장단 선출 후보자 등록제의 선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위원회 의안 상정시기를 조정하여 의안 심사준비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등 준비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의장단 선거 절차 정비(안 제11조)
- 의안 등의 상정시기 조정(안 제59조)
  - “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” 삭제
  - 동의 및 승인에 관한 의안: 5일 → 7일
  - 보고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 보고서 및 계획서: 3일 → 5일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(회의규칙)

### **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최인숙)**

- 의안번호 제1473호,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,
- 의장, 부의장 선출시 입후보자 등록 및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 대한 선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위원회 의안 상정시기를 조정하여 의안 심사준비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준비절차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규칙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규칙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

### **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 근거법규

## 지방자치법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